

1. 개정이유

군형사사건 열람·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반영하여 미비된 규정을 개선하고,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열람·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(안 제4조)

나.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·복사 수수료를 다양화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군 형사사건기록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 형사사건기록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다른”을 “「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등 다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변호사”를 “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, 변호사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검찰관”을 “군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직급 및”을 “직급 또는 계급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동 천공(穿孔)하거나”를 “구멍을 뚫고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검찰관이”를 “군검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수수료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를 준용한다”를 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및 별표
2. 「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」 제5조제1항·제2항, 별표 1 및 별표 2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수사 중인 사건 기록, 진정·내사 중인 사건기록, 불기소 사건기록(기소중지·참고인중지·공소보류 사건기록, 항고·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), 종결된 진정·내사 사건기록,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(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), 재판 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·복사,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·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	제3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 <u>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</u> 」 등 다른 -----.
제4조(열람·복사의 방법) ① 사건기록의 열람·복사는 <u>검찰관</u> 의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[변호사,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]	제4조(열람·복사의 방법) ① ---- <u>군검사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,

또는 법무조합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]은 그 사무원, 사용인, 그 밖의 사람(이하 “사용인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·복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검찰관이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·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)

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인증의 방식 등) ①·② (생략)

변호사-----

---. ----- 군검사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군검사가 -----

-----.

제5조(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)

① -----

군검사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인증의 방식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등본·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“이 문서는 등본(초본)입니다”라는 문구와 연월일, 소속 기관, 직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(間印)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.

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(穿孔)하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준수 사항 등) ① 사건기록을 열람·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,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, 그 밖에 검찰관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② 검찰관은 열람·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·제3항, 제5조제1항·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,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·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

③ -----

직급 또는 계급 및 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구멍을 뚫고 -----

-----.

제7조(준수 사항 등) ① -----

군검사가 -----
-----.

② 군검사는 -----

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8조(수수료) ① ~ ⑤ (생략) ⑥ 사건기록 중 도면·사진·디스크·테이프·필름·슬라이드·영상녹화물·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(청취·시청을 포함한다)·복사(복제·인화를 포함한다) <u>수수료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를 준용한다.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-----. 제8조(수수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</u> 1. <u>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및 별표</u> 2. <u>「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」 제5조제1항·제2항, 별표 1 및 별표 2</u>
---	---